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34
----------	------

발의연월일 : 2017. 8. 29.

발의자 : 임종성 · 이찬열 · 조승래

이원욱 · 김철민 · 김병욱

김병기 · 박정 · 조정식

박주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 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 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u>&lt;신설&gt;</u>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u> <u>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u> <u>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u> <u>전 방향과 혁신기반 조성에</u> <u>관한 사항</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